

변경대비표

1. 대상약관

- 연금저축계좌(집합투자증권) 설정약관

2. 시행일 : 2016년 6월 7일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
4. 변경 대비표

변경 전	변경 후	비 고
연금저축계좌(집합투자증권) 설정약관(구 하나은행)	연금저축계좌(집합투자증권) 설정약관	전산통합 시행에 따른 약관명칭 변경
<p>제 22 조(약관의 변경 등) ① <생략></p> <p>②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가입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 일 전(제 1 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일전)까지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기존 가입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가입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</p>	<p>제 22 조(약관의 변경 등) ① <생략><현행과 동일></p> <p>②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가입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 일 전(삭제)까지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기존 가입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가입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금융투자협회 요청(공정거래위원회 시정요청)</p>

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③ ~ ⑤ <생략>	③ ~ ⑤ <생략>	
(신설)	<부칙>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.	